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438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 김 윤 · 박민규 · 오세희

서미화 · 최민희 · 주철현

임광현 · 정혜경 · 전진숙

박홍배 • 위성곤 • 채현일

이재강 · 김용민 · 김우영

정진욱 • 이수진 • 서왕진

서영석 • 황명선 • 문금주

송재봉ㆍ이광희ㆍ황정아

문대림 • 강준현 • 전종덕

남인순 · 허 영 · 박희승

이기헌 · 정준호 의원

(32일)

제안이유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정

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 별 의료인력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회적 합의를 통 해 의대정원을 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 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의안번호 제4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의결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을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
- 6. 지역의사 정원
- 7.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
- ⑦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정할 때에는 제9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정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건의료인력의"를 "제9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

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인력의"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이고 과학적인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한의사·치과의사
- 2. 「의료법」제6조에 따른 조산사
- 3. 「간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간호사등
- 4.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 7.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가 수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 2. 진료권 단위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 3. 진료권별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 추계
 - 4.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 3.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에 관한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⑥ 수급추계위원회는 수급 추계 활용 통계, 변수, 모형 등 구체적인 추계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로 보건의료인력 전문분 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종 위원이 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을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지원과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9.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정원 적정성 평가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 7항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 중 의사인력을 제외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 행한다.
- 제2조(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관한 특례) 「고등교육법」 제34 조의5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 여 이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3조(「간호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개 정규정은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전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
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ಶ]) ①
주요 시책을 <u>심의하기</u> 위하여	<u>심의·의결하기</u>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	
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②
항을 <u>심의한다.</u>	<u>심</u> 의·의결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
	<u>인</u>
<u><신 설></u>	6. 지역의사 정원
<u><신 설></u>	7.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
<u>5</u> . (생 략)	<u>8</u> .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⑤
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	1
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
<u>는</u> 사람	람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⑥ (생략) <신 설>

<신 설>

⑦ (생략)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설>

- ⑥ (현행과 같음)
- ⑦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 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정할 때에는 제9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정한 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심의 · 의결한 사 항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① -----제9조의2 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 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 의료인력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보건 의료인력의 안정적이고 과학적 인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 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수

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 사·한의사·치과의사
- 2. 「의료법」제6조에 따른 조 산사
- 3. 「간호법」제2조제4호에 따 른 간호사등
- 4.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 7.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 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가 수준 보건의료인력의수급 추계
- 2. 진료권 단위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 3. 진료권별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 추계
- 4.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 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 3.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 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 관 <u>또는 단체를</u>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

건학에 관한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⑥ 수급추계위원회는 수급 추 계 활용 통계, 변수, 모형 등 구체적인 추계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 인력 직종별로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종 위원이 분 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수급추계위원회의 <u>구성·운영과</u>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 관) ① -----보건 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의료인력의 효율적 지원과 정 책 개발 등을 위한 연구를 수 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정

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부출연연구기관을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정원
	적정성 평가
<u>9.</u> (생 략)	<u>10.</u>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